

『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13일

##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가.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상임 및 비상임단원 채용 시 지역내 우수 예술인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의 지역인력 비중은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이는, 지역 문화·예술 발전과 지역내 거주 중인 예술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저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나. 따라서,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해 시립예술단원 채용 시 지역인력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을

규정하고자 함.

## 2 주요내용

가. 단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제3항 신설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ysi3312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| 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조항 | 찬반여부 및 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
| ○주 소:<br>○성 명:<br>○연락처: |       |           |    |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## 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단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전형의 방법) ①·② (생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| 제9조(전형의 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 단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|